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4.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10월 13일

나. 발 의 자 : 마숙란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마숙란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고유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원 재산의 출연 등, 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 보조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문화원의 사업,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의 무상대여 등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수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청구,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회계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문화원 사무의 검사와 감독, 사업 실적과 계획 등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또한, 부칙 안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사무가 연속되도록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원의 책임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원이 출연금과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개발·보급 등 지역문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마숙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
----------	-----

발의년월일: 2017년 10월 일

발 의 자: 마숙란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고유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원 재산의 출연 등, 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나. 보조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다. 문화원의 사업,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라.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영등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 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산의 출연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취소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
6.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
7.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출연금 등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④ 제9조제1항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구가 지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